

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1. 11. 30 선고 2021가단7831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유한회사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1. 11. 30.

주 문

1. 경북 예천군 C 대 195㎡중 15분의 1 지분에 관하여,
가. 피고와 D 사이에 2016. 4. 28.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 약정을 취소하고,
나. 피고는 D에게 대구지방법원 예천등기소 2016. 10. 4. 접수 제16602호로 마친
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(무변론 판결)

판사 남인수

별지